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30
2025.5.19.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중요 공감대 만장일치 확인



■ 판례 동향

관세감면 자본재에 별도 지급된 로열티를 추징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품목분류 동향

식초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부록

美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 韓·美 관세율표 연계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5월 19일(통권 제2130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중요 공감대 만장일치 확인

06 **Weekly News**

12 **현장 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18 **관세행정안내**

임가공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27 **질의응답사례**

면세 기준금액

판례동향

30 **관세판례해설**

관세감면 자본재에 별도 지급된 로열티를 추징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45 **품목분류해설**

식초의 품목분류

56 **세번 바로잡기**

땅콩 조제품

58 **상식 밖의 상품학**

제주 해수욕장 뒤덮은 미역

최신개정법령

60 **부령**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65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중요 공감대 만장일치 확인

관세·통관 행정 AI 도입 확대, 공급망 분야 진일보 협력 도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APEC의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체 회의가 열렸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통상장관회의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 주요국 경제 통상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긴밀해지고 있지만 세계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오늘날의 APEC은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APEC은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으며,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회의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과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는데 AI 원칙(OECD Principles on AI)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Yoshiki Takeuchi)이 발제했다.

두 번째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해당 세션에서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이 발제자

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5월 16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오후에 들어 21개국 통상장관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APEC 협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첫째,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둘째,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셋째,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에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paperless trade)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美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847억 편성,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약 2,000개사 지원 목표로 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신속 대응 요구 업종 대상 패스트트랙 신설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에 추가경정예산 847억 원이 투입된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관세 대상 업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정 절차도 간소화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월 16일 美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으로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개시했다.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한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접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지난 공고와 달리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획득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요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관세 대상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5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美 관세에 떠는 수출 중소 ··· 중기부 추가지원 방안 발표

피해 수출기업 위한 긴급자금 공급 및 상담창구 확대

7월 9일 발효 예정인 美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14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 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美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철강 △17.8%, 알루미늄 △7.6%)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 중소기업의 81.0%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부담(46.0%), 정확한 관세정보 파악(43.9%), 계약 지연·취소(42.4%), 제3국 수출경쟁력 약화(32.4%)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특히 물류지원 강화 정책(55.8%)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책자금(45.9%), 관세정보 제공(40.4%)이 그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해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해 관세 피해기업은 일대일 전담관제를 도입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구축된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현지진출 노하우를 전수한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긴급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실설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 회복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美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물류사 또는 플랫폼사가 상품 배송의 전과정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경우 對美 수출기업에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 지원자금을 1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 김성은 기자 |

●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

단기	관세 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수출기업 긴급자금 공급
	① 관세 애로 현장 밀착 대응체계 구축 ② AI·화상 상담 및 해외 멘토단 구성 ③ 원스톱 관세대응지원본부 운영	① 관세 피해기업 자금 확충 ② 관세 컨설팅 지원 확대 ③ 온·오프라인 수출기업 물류 부담 완화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 개척	관세 대응 정책 인프라 강화
	① 해외 신시장 진출 지원 ② 비관세장벽 대응력 강화 ③ 대·중기간 협력, 생태계 경쟁력 확충	① 수출기관 연석회의 개최 ②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현지 컨트롤타워 구축 ③ 불공정거래 근절 및 인센티브

일본向 무역대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 가능

5월부터 무역대금카드결제플랫폼 對日 서비스 개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수출대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무역대금카드결제플랫폼(GTPP, Global Trade Payment Platform)의 對일본 서비스가 개시돼 일본 바이어가 카드를 사용해 즉시 한국 기업에 대금을 엔화 또는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5월 15일 밝혔다.

GTP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며, 일본 내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SMCC), 미쓰비시 UFJ 니코스(MUN), 유씨카드(UC)를 보유해야 한다.

GTPP는 바이어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우리 기업이 5일 내에 수취할 수 있는 결제 전용 플랫폼으로, KOTRA와 VISA, NHN KCP가 협업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이어는 결제일로부터 최대 45일 후까지 실제 출금을 늦출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페이팔(Paypal) 등 다른 국제 송금 플랫폼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1.5%),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결제, 무역사기 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 GTPP 구조 및 기관 간 역할 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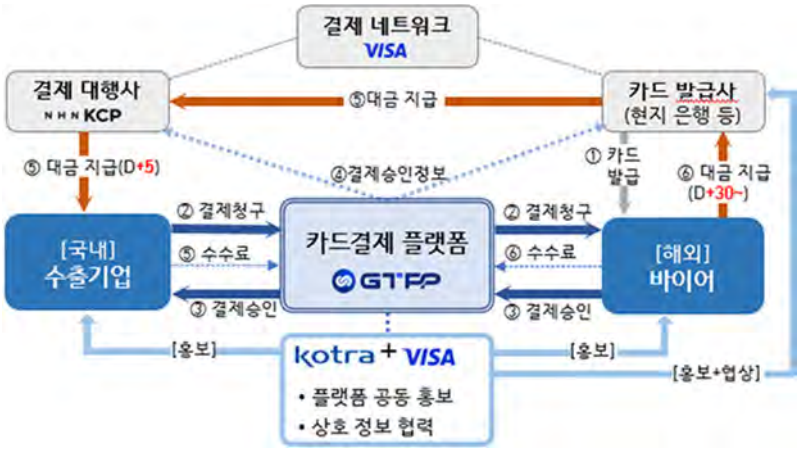

GTPP는 올해 1월 대만부터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현재 일본, 싱가포르, 몽골 바이어와 거래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올해까지 미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이 추가되고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14개국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콜센터(1551-7119)로 문의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포장용기 원산지표시도 임의로 제거하면 처벌

관세청이 수입물품뿐만 아니라 수입한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도 손상하면 위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중국産 파우치 9만 8,900개(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産 파우치를 수입하면서, 물품까지 중국産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해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세관은 대부분 기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수입한 포장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입신고 시 파우치 현품에 원산지 라벨이 봉제된 상태(좌)였지만, 공공기관 납품 시에는 원산지 라벨이 손상돼 있는 것(우)을 볼 수 있다(출처 : 서울세관)

잔류농약 '포멜로'·무신고 수입 '생수통 밸브'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베트남産 포멜로와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생수통 밸브를 회수 조치했다.

5월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産 포멜로에서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많은 양인 0.0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産 포멜로(생산연도 2025년)다.



회수 조치된 포멜로와 생수통 밸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판매업체는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다.

| 김성은 기자 |

관세 따라 물류 수요도 출렁 ···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

2025년 1~3월 미국의 수입수요 큰 폭으로 증가하다 4월부터 뚝↓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전후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변화가 관측됐다. 국제금융센터는 4월 이후 對美 교역이 위축돼 물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5월 12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공급망 리스크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3월에는 미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늘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기준 미국의 상품 수입량 증가율은 2024년 11월 8.2%에서 12월 10.5%, 올해 1월 24.1%, 2월 20.5%로 선진국의 수입수요를 견인했다. 관세 인상 예고로 선구매 증가와 기업들의 재고 확보가 이어지며, 미국행 물동량이 급증한 것이다. 반면 4월 들어서는 對美 교역이 위축됐고 물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박진혁 부전문위원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및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며 해운사들의 항로 조정 및 운항 취소 사례가 늘었다"며, "2분기 중 미국의 수입물량이 감소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소지가 큰 데다 국가별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단기간 내 운송 수요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상품수입 증가율(yoy %)과 글로벌 해상 화물량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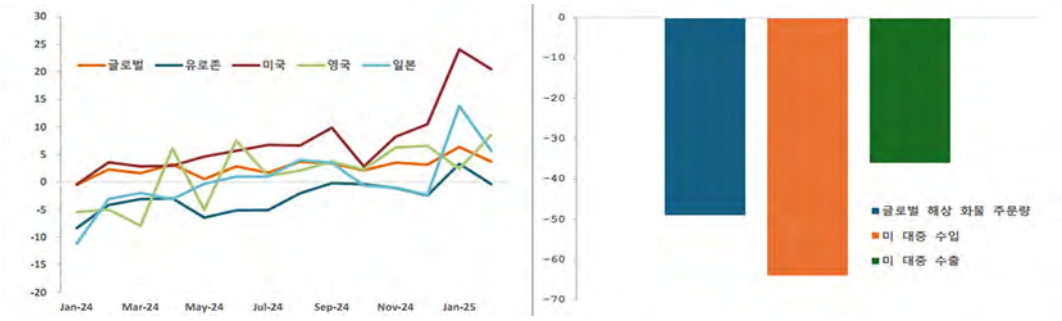

출처 : 국제금융센터(자료 : 네덜란드 CPB, Vizion, CNBC 3월 24~31일 대비 4월 1~8일 변화율)

향후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상대국들의 조치,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에 따라 공급망이 경색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해상네트워크를 對美 압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부전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 12일 美·中이 관세율 인하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이 높은데다 추가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마찰이 반복될 수 있다"며,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도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김성은 기자 |

한·ASEAN 경제·통상 싱크탱크 컨퍼런스 개최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ASEAN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ASEAN-ROK Think-tank Dialogue on Economic and Trade Policy) 컨퍼런스가 열렸다.

작년 10월 '제25차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ASEAN이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ASEAN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ASEAN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컨퍼런스에서 'ASEASN의 디지털 경제', 'ASEAN의 수출과 경제발전-한·ASEAN FTA 업그레이드 관점에서'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SEAN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2위 직접투자 지역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강화됐다"며, "협력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촬영용으로 직구한 중고 아이폰 99.4%가 '위조'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을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 위조 상품도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5일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를 조사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동원돼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많은 SE모델(2016. 4.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방침을 밝혔다.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이승희 과장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PFRAS 2025,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정보 협력 논의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2025'가 열렸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다뤘다.

아울러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에서는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 지역 내 규제 조화를 위한 토론, ▲식품안전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했다.

폭탄관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시장

무역전쟁 진짜 휴전일까?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각각 對中, 對美 관세를 30%와 10%로 90일간 낮추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CNBC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의 무역긴장이 완화하는 신호"로, 뉴욕타임스는 "美·中 간의 무역을 중단시킨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라 평가하는 등 양국의 합의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美·中 관세전쟁으로 인한 우려가 일정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12일 관세청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여러 차례 발표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의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에 600여 명이 참석했다(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EU, 인도,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에서 근무하는 관세관들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대응 및 관세행정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와 상호관세를 둘러싼 주요국의 대응, 그리고 美·中의 합의에도 남아있는 불안정성·불확실성 요인이었다.

본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는지, 관세사 및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 美·中 상호관세 115%씩 인하해도 추가 관세 불씨는 여전

양국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최대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産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를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한다. 각각 115%p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일부 수출제한 조치 또한 90일간 유예됐으며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일부 업체의 수출을 허용했다.

단기적인 우려는 완화됐지만, 美·中 간 잠재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한 품목관세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미 美 상무부는 4월 1일 반도체 및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관세청 설명회에서 '트럼프 2기 무역정책 동향 및 통관환경 변화'를 설명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수민 관세관은 "특히 의약품은 미국의 HS 분류가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아 통계 차이가 크다"며, "의약품 품목관세가 발표되면 우리가 의약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美 상무부는 수입산 구리목재와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구리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은 2024년 기준 약 170억 달러의 구리를 소비했는데, 이중 45%를 수입에 의존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4일 베네수엘라産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모든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며, 30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産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5~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産 석유의 경우 직접수입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수입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며 관세는 해당 국가가 베네수엘라産 석유 수입을 중단한지 1년 후에 만료된다.

정 관세관은 "베네수엘라産 석유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인도다. 중국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産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産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환적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도 관세가 적용된다.

■ 오락가락 관세 번복으로 통관 현장은 대혼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며칠 새 관세 정책을 반복해서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한 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더니 이틀 만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0일 유예했다. 한달 뒤엔 또 1개월을 유예했다. 중국 및 홍콩發 소포 반입은 2월 4일 중단했다가 다음날인 5일 재개했으며, 중국産 소액면세물품 미소기준 제외 발표가 4일에 있었지만 7일엔 유예, 4월 2일에는 다시 제외 발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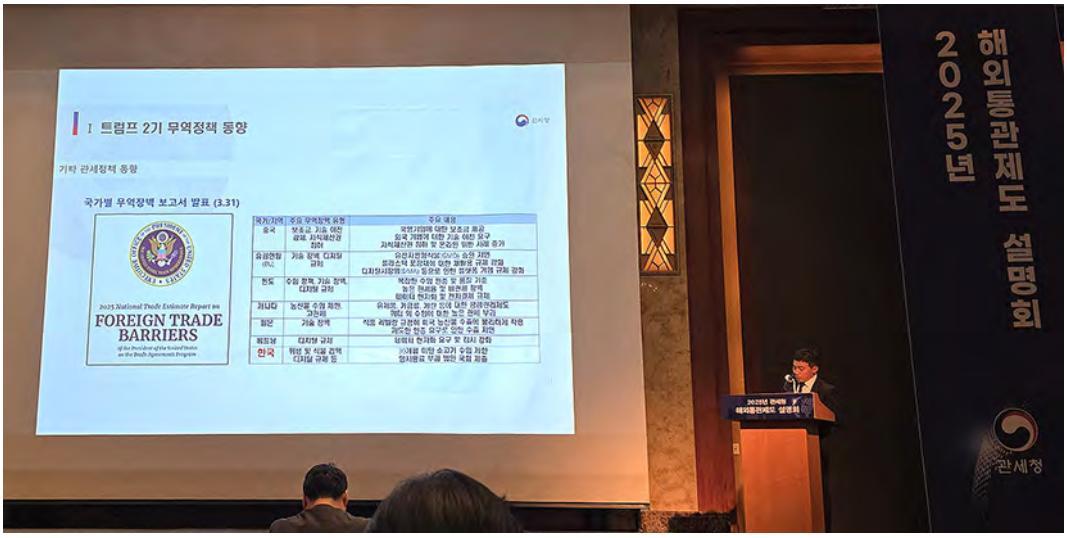

'트럼프 2기 무역정책 동향 및 통관환경 변화'를 설명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수민 관세관(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여기에 시스템까지 말썽이었다. 한국産 철강 쿼터 요건이 3월 12일 자정 기준으로 종료됐지만, 수출승인서 관련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수출인증서 없이 원산지 국가를 한국으로 기재한 철강 제품의 수입신고가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관세사, 수입자가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ABI) 업데이트 미비로 발생한 오류였다.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가 한 둘이 아니다보니 어디까지 중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4월 29일 행정명령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으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 가능하다.** 즉, 자동차 관세와 對중국 펜타닐 관세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새로운 신고방식의 등장 ··· CBP도 애매한 함량과세

새로운 신고방식이 등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가령 제품 가격이 10달러, 철강 함량가치가 3달러라면 3달러에만 25%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함유량을 모르면 전체 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적용한다.

미국품목번호(HTS) 제73류 또는 제78류 이외의 파생제품에 대한 함량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CBP는 "관세법 제1401a조에서 시행하는 관세평가협정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됐거나 지불해야 하는 총가격(total price or payable)이며,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한다. 운송, 보험 및 국제선적 관련 서비스 비용, 수수료, 경비를 제외한 직접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철강·알루미

늄 함량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 수익을 위해 지불한 송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CBP가 수입신고 시 알루미늄 분석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향후 수입물품과 관련해 수입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분석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는 외국산 부품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産이 20% 이상 포함된 수입품은 비미국産 내용물의 가치에만 과세하는데, CBP가 수입자가 미국産 내용물을 과장해 비미국産 내용물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면 전체 가치에 과세 및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함량가치 평가방식에 대해 CBP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다. 정수민 관세관은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가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업이 함량가치 산정을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CBP가 어떻게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비함량가치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KOTRA 통상협력팀은 지난 3월 21일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시행 후 현지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함량가치 평가 방식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불확실해 생산기록과 자재명세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 제품 원재료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빙서류, 관세납부 기록 등을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품목분류 검토·반덤핑 조사 강화' 미국은 이미 예고했다

정수민 관세관은 "CBP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품목분류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 미납 및 잘못된 품목분류 적발 시 최대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대통령 포고령에 명시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입자, 현지 관세사를 통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우회수출에도 칼을 빼든 만큼 원산지 판정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사실상 FTA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정 관세관은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유무를 검토하게 되는데, 최근 중국産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자 미국이 철강제품 등에 대한 현지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강제노동규제 남의 일이 아니다

4월 3일 CBP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신안 소재 태평염전에서 공급된 천일염을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노동에 근거한 미국의 한국産 수입규제 첫 사례로 美 관세법 제1307조에 따른 1단계 조치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이었다.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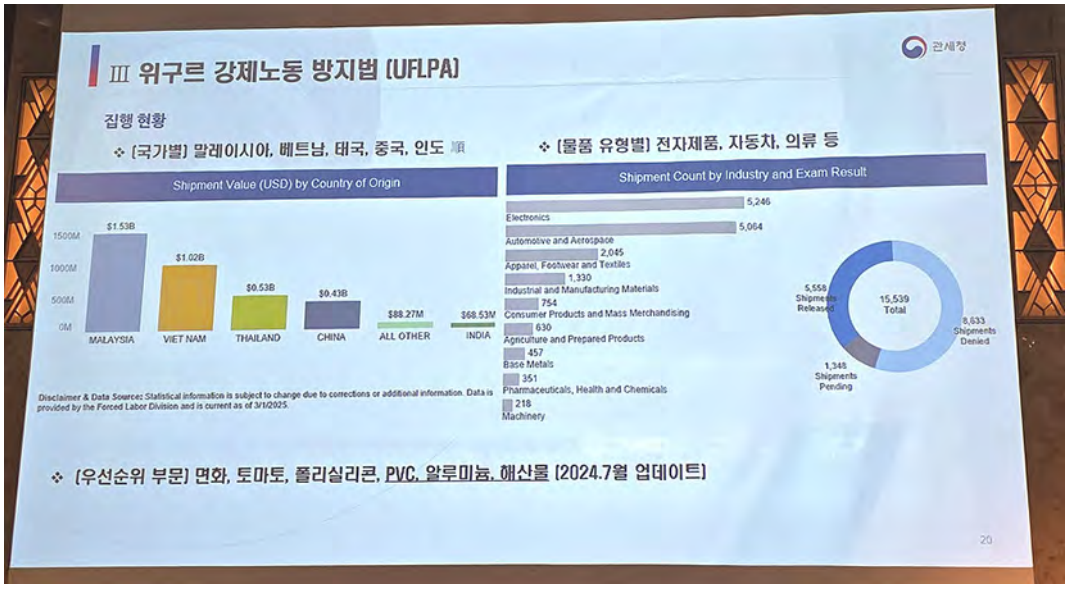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에 대응하려면 생산부터 수입까지 물품 전체 공급망 관계도를 관리해야 한다(출처 : 조무경 관세관 발표자료)

자가 대상물품을 재수출하거나 강제노동금지 위반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조치다. 2단계는 수입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압류, 재수출 기회는 없는 확정판정(Finding)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7일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IUU)'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활용 등 무역 관행을 검토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해산물 공급망과 관련한 강제노동 관행 검토는 북한과 중국 간에 이뤄지는 어업 관련 '노예노동' 관행을 겨냥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설명회에서 美 관세당국의 강제노동 규제를 발표한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조무경 관세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51건의 WRO 중 36건, 9건의 확정판단(Finding) 중 5건이 중국에 집중됐다. 그밖에 이란, 러시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적대국 대응법(CAATSA),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거나 특정 지정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美 관세법 제1307조에 의해 수입금지 대상으로 간주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품 종류와 관계 없이 운송까지 포함한 모든 생산단계 흐름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조 관세관은 "CBP는 자료를 건건이 검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문번역한 통합본으로 제출하되 요약본, 색인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통관보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자가 기업자료 제공을 꺼릴 수 있어 영업비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예전에 심사 대상에 올랐던 공급망과 동일하다면, 해당 제품이 美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CBP와 소통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트럼프 1기' 1차 백신 맞은 중국, 면역 생겼다

美·中 관세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對美 자신감이 유독 돋보인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의 강경훈 관세관은 중국의 對美 수출의존도가 2018년 19.2%에서 2024년 14.7%로 감소했으며, 미국 제품 중 상당수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중국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국가세관기관인 해관총서(GACC)는 4월 9일 미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해관특별감독구(보세구역) 관리 방법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4월 10일 21시 01분 이후 해관특별감독구로 수입된 미국이 원산지인 물품, 이를 가공한 완제품(부산물 및 잔재물 포함)은 보세유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해관특별감독구에서 미국産 원재료로 가공한 1차 가공제품을 해관특별감독구에 소재한 다른 장소(기업)에서 2차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보세가공 물품이 중국 내 반입(수입) 시 원재료별 미국産 여부를 건별로 심사해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해관총서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세구역 내 미국産 제조설비를 수입할 경우 추가 관세분에 대해 감면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는데, 사실상 미국産 제조설비의 수입금지 조치라 할 수 있다.

강 관세관은 "미국産 물품의 보세구역 간 이동은 6월 10일부터 일부 허용하겠다고 발표됐지만, 중국에서 가공무역으로 중국 내 내수판매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반도체협회(CSIA)는 외국으로부터 반도체가 수입될 경우 원산지 기준을 '웨이퍼 테이크아웃, 즉 제조공장 위치'로 변경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후공정인 패키징(Packaging) 공정이 어디서 이뤄지는지 관계없이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인텔처럼 미국에서 칩을 생산한 뒤 아시아 국가에서 후공정을 진행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월 8일부터는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등 7개국에서 수입되는 목재 포장물을 대상으로 해충 검사강도를 높였다. 7개국의 목재 포장물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인증인 IPPC 표시와 관계 없이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강 관세관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통관기간을 단축하려면 목재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플라스틱 포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율을 대폭 인하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정책을 지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기업에 유리하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고 한다"며, 중국의 수출통관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임가공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일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원재료 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임가공수탁자가 구매해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임가공수탁자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한다면 임가공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가공위탁자는 임가공수탁자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1) 개요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이 필요하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을 하려면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① 원재료에 관한 정보, ② 제조가공에 관한 정보, ③ (필요한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정보다. 그리고 이를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원산지 증빙자료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가 있다. 다만 물품의 수출자가 수출대상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보 및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거래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확인(KR)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사용된다.

(2) 수출자와 제조자

원산지는 제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보통 제품이 제조·생산된 국가를 뜻한다. 결국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FTA는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며, 단순히 상대 당사국에서 제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하고,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조가 됐다는 증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재료 내역이나 제조공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자가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 등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정상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를 살펴보면, ①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②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③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조자이면서 수출자인 경우 자사로 입고되는 원재료 내역 및 자사 내 수행 제조공정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자와 제조자가 따로 존재하는 수출 건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조사 내로 들어오는 원재료 내역 및 제조공정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 뒤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이 FTA상 원산지 물품에 해당된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그 후 수출자는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상황에서 제조자는 수출자의 완제품 생산 요청에 따라 직접 물품의 원재료를 구매한 뒤 완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출자인 임가공위탁자가 원재료 중 일부를 직접 구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제조자인 임가공수탁자가 해당 원재료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활용되며,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제조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원산지증명서와 매우 유사하며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그 자체만으로는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FTA 목적상 한국산(또는

역내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국내거래와 관련된 FTA 활용에서의 중요한 서류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으로 해당 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에 해당한다.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불리기도 하는데 원산지확인서가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확인기간의 경우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며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제8번란에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며, 반대로 제12번란에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는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로서 수량 및 단위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제조자가 납품하는 ①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용도와 ② 유통사 공급물품의 원산지 확인 용도(완제품 또는 원재료)가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수다. 수출자는 생산자가 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없이는 해당 물품이 FTA 목적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품 A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자는 생산자로부터 제품 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작성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수출제품의 생산자(수출자)가 원재료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제품 A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고, 제품 A와 원재료 a의 4단위 HS Code가 같은 경우 제품 A가 한국산 물품이 되려면 해당 물품과 HS Code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 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원재료인지 제품인지 또는 거래 단계의 복잡성 여부와 상관없이 FTA 목적상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발급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작성하거나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도 작성 가능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납품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생산자가 작성한다. 그러나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납품되면서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곧바로 제조 또는 수출에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다시 한번

국내 납품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태로 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도 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은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하게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지 않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이에 따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하듯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이뤄진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① 작성번호 및 작성일, ②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③ 원산지·원산지 결정기준, ④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⑤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⑥ 자유무역협정의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4)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다른 원산지 증빙서류와의 관계

이번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확인서와의 관계를 분석하겠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사용 가능 여부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법령인 「FTA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그 자체만으로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에 반해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발급(작성)됐다면 수입국에서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즉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거래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때 사용하고, 원산지증명서는 국제거래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절차를 진행하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를 확인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서식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양식이 상이하지만,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어떤 협정에 대해서 작성하든 「FTA관세법」상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원산지소명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로는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각각 국내·외용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산지(포괄)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의 세부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서류가 원산지소명서에 해당한다. 원산지소명서에는 원산

지증명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조가공이나 원재료 내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대외용 서류로서 존재하는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관련 정보를 작성할 수 없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및 원산지 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별지 제15호 서식] 원산지확인서를 살펴보면 「FTA관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형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고시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활용이 가능한데, 해당 협정을 활용함에 있어 국내거래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와 APTA 등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고시에 규정된 협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협정은 APTA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고시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해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제출, 보관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상 APTA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FTA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존에 발효돼 있는 22건의 협정에 APTA를 추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지 않은 업무진행 방식이나 실무상 「FTA관세법」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원산지(포괄)확인서 추가 고려 사항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관세청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관해 답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은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관세법」에 의거해 외국으로 보나 원산지(물품 생산 또는 가공)를 고려할 때는 우리나라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해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한 경우, 타 법인 소속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명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은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민법」 제34조)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이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했다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협정 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해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포괄확인기간 내에 있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 사항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일부 원재료를 공급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임가공수탁자가 구매해 완제품을 생산 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 임가공수탁자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다.

일단 무상으로 원재료를 100% 지급하는 형태로 임가공계약이 이뤄진다면, 임가공위탁자는 물품에 대한 임가공 비용을 지불하고 최종제품을 수령할 것이다(무상사급). 다만 임가공위탁자가 유상으로 원재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판매하고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임가공위탁자는 최종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납품 비용과 자신의 임가공 비용 등이 합쳐진 비용을 임가공수탁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유상사급).

현재 사례는 일부 원재료에 대한 무상사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임가공수탁자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 시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임가공수탁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다.

(2)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제조기반이 없는 수출자는 물품의 수출을 위해 제조사와 접촉해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보(기능, 성능, 규격 등)를 제공하면 제조자는 이에 따라 물품을 제조(제작)한다. 또한 제조사는 수출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구현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제조공정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과정에서 수출자는 원재료 중 일부를 직접 구매해 제조자에게 해당 원재료를 통한 제조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사급(directed sourcing, 賜給)이라고 부른다. 사급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 중 일부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고, 1차 협력사는 가공 후 완성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구매계약을 말한다.

사급은 이미 제조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구매해 판매하는 케이스보다는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하는 데 있어 원재료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효율적인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주 거래업체의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직접 원재료를 구매해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급의 행위를 할 때 수출자가 구매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납품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상사급한 원재료의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한 원재료를 가격 그대로 유상으로 납품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상적인 완제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가 무상사급 형태의 제조과정, 후자가 유상사급 형태의 제조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상사급은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무상사급은 원재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가공수탁자가 원재료를 공급받도록 하거

나 주는 형태다.

무상사급의 경우 일부 원재료를 구매해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원재료를 수출자가 구매해 제조자는 제조·가공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제조자에게 임가공 비용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원재료에 대한 구매 증빙자료도 모두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그에 대한 거래증빙을 하는 쪽도 결국에는 수출자가 될 것이다. 제조 능력만 빌려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의 경우에서 어떤 당사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갖춰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제조공정에 대한 증빙을 제조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어느 사안이나 같다. 그 원재료가 누구의 소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의 핵심 정보인 원재료 내역에 대한 증명. 즉 BOM을 누가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원산지 판정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무상사급의 경우 제조사는 주요 원재료를 수출자 등 임가공위탁자에게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원재료와 임가공 비용만 청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위탁자가 누구에게 구매했는지 그에 대한 가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유상사급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제조자가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의 구매처가 최종물품을 납품할 위탁자가 아닌, 제3자(원재료 납품사)가 아닌 위탁자가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구입, 제조까지 책임지는 제조사는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연히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앞서 일반적인 경우 무상사급은 임가공수탁자가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고, 유상사급은 여느 제조자와 같이 임가공수탁자가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무상사급의 경우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핵심 근거는 '정보의 부족'

이다.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원재료 구매내역 및 그에 대한 가격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탁자의 원산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가공위탁자가 자신이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대해 공유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한다면 임가공수탁자는 '정보의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 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원산지 증빙자료를 토대로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한다면 임가공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단순히 무상사급의 형태라고 해서 임가공수탁자가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공한 무상사급 물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가공위탁자는 구매 당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했다면 이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임가공위탁자가 이를 직접 제조한 물품이 아니라면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원재료 제조사로부터 수취해 이를 근거로 다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무상사급하는 원재료에 대해 임가공수탁자가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의 구매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뿐 아니라 해당 원재료의 역내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까지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원재료 정보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가공위탁자는 제조에 관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만 임가공수탁자에게 수취하고, 원산지 판정은 직접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일부 원재료를 공급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임가공수탁자가 구매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정보들이 결합돼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수행돼야 할 것이고, 결국 임가공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실제 원산지 판정이 이뤄질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다.

FTA 원산지 실무상 원산지 판정 방법은 매우 많고 완제품에 대한 입증주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FTA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면세 기준금액

해외 직구 시 배송대행지를 거칠 경우 운송비가 2회 발생하는데, 이때 운송비도 면세 기준금액인 150달러에 포함되는 건가요?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되는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전체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수입요건 / 보청기의 수입요건

제9021.40-0000호에 분류되는 보청기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9021.40-0000호에 분류되는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청기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의료기기법」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골도형보청기 ◦ 기도형보청기 ◦ 구화훈련용보청기 ◦ 촉각형보청기 ◦ 반이식형보청기 ◦ 이식형보청기
 ◦ 인공중이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분류 / 떡구이(Grilled rice cake)의 HS Code

치즈 등을 떡으로 완전히 감싼 떡구이(Grilled rice cake)의 HS Code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쌀가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쌀가루의 것'에 해당된다면 제1901.90-9091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 원산지표시

현품에 'Mexico Origin'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데 적정한 표시 방법인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가명 Origin' 표시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Country of Origin : 국명'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해외 직구 물품 FTA 사후적용을 위한 환급 신청

해외 쇼핑몰에서 한·EU FTA 관세 면제 품목을 직구했지만, 쇼핑몰 측 실수로 송품장(Invoice)을 받지 못한 채 일단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물품 수령 1개월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는데, FTA 사후적용으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통관지 세관에 사후협정 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신고서 원본*(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도 가능)
  *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협정문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 문안 및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및 사후협정 적용 여부(관세 환급 여부)는 해당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돼야 할 원산지신고 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돼야 할 원산지신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별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감면 자본재에 별도 지급된 로열티를 추징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심2017관0198(2018. 7. 6.) 대상결정례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Ⅰ. 머리말

세계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기 위해 좋은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재정지원, R&D 지원체제 구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증진 효과가 있다. 즉 조세 부담 완화로 생긴 여유자금이 설비투자 확대 등 투자에 대한 자본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1)]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자본재의 정의 및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자본재'란 "산업시설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유도 등에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돼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았으나 추후 세관의 관세조사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이 특허권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자본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충족돼 관세추징이 발생한 경우 권리사용료에

1) 기획재정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과 기술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 하에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입한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과 1년 연장 가능에서, 5년간 100% 감면과 2년 연장 가능으로 최대 7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통해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권리사용료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자본재의 영역으로 규정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으로 분류된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처분경위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자로부터 반도체패키지용 유리기판 제조용 제조 및 연마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외 17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해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수입신고번호 ○○○ 외 42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해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관세감면 신청 없이 수입신고해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청구법인은 2009년 해외 A사 간 체결한 '3자 라이센스계약'(이하 '쟁점로열티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쟁점로열티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A사에게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Know-How)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했다고 봐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해,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Ⅲ.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설비이고,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다.

(1)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려면 쟁점로열티의 지급 원인 내지 대상이 되는 특허나 노하우가 제조에 관한 것이고, 쟁점물품이 그러한 방법에 관한 특허 또는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유리산업뿐만 아니라 광학·반도체·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장비다. 쟁점물품 중 절면설비를

설계·제작한 일본 수출자는 유리가공 기계·설비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기술로 제작한 절단기를 타사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⑵ 완제품인 유리기판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정밀한 설비의 조작·운영 및 기타 노하우가 필요하다.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설비가 아니라 '공정관리 노하우'이고, 청구법인은 A사로부터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쟁점로열티를 지급했다. 청구법인이 A사로부터 제공받은 연마공정 노하우는 '공정관리 노하우'로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

⑶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외에 '사업운영 노하우' 대가로도 지급됐다. 경쟁이 치열한 유리기판 시장상황을 적시에 포착·대비하기 위해 A사가 제공하는 '사업운영 노하우'가 긴요한바, A사가 청구법인에게 문서·직원연수·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경영·인사·영업 및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분석보고서에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른 무형자산 거래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

⑷ 「관세법」상 거래조건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A사를 통해 구매하든, 아니면 설비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든 A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구매 후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도 쟁점물품을 철거·회수하는 계약내용이 없고, 설비구매계약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드시 A사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구매선택권 제한 규정도 없다.

⑸ 청구법인은 A사가 제작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제3업체들이 제작한 쟁점물품을 A사를 통해 구매했다. 이는 A사가 과거 여러 차례의 설비구매 경험으로 인해 제작업체 선정·설비 발주·설계 확정·시공 등에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A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설비판매가격의 7%를 A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사를 통하지 않고도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조건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⑴ 쟁점로열티가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해 과세할 수 없다. 관세감면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거래가격)과 관련된 세액이 감면된다. 따라서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요소의 가산에 따른 추징금액 역시 감면돼야 한다. 특히 로열티는 설비 수입 당시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할 수도 없다.

(2) 관세청장은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가산요소 추징과 관련된 유사 선례에서 가산요소도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고 통관지 세관장도 선행 사건에서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선행수입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로열티도 감면 대상으로 봐 이를 과세하지 않았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로열티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17. 3. 13.자 질의에 대해 2017. 9. 4. 청구법인에게 자본재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한 로열티도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3) 청구법인은 2012. 1. 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설비 투자와 관련해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자본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중 약 ○○○에 해당하는 쟁점설비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는 별도의 관세감면 신청 없이 관세 등이 감면돼야 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행사건의 로열티에 대해 선행수입설비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돼 있어 선행수입설비에 해당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했고, 이에 대해 통관지 세관장 등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법원의 위 선행사건에 대한 판단과 달리, 쟁점로열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고, 쟁점로열티에 이러한 노하우가 포함됐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A사로부터 반제품인 소판유리를 수입 및 구매한 후, 이를 절면·연마 가공해 유리기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전량 관계회사에 재판매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생산기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업에 관한 '사업운영 노하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운영 노하우'는 A사 간 체결한 제1차부터 제3차 라이선스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자 간 체결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구체적 내용 없이 명목상으로만 추가됐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운영 노하우 예시'에서 A사가 제공하는 '사업

운영 노하우'를 막연하게 경영·인사·영업·제조 및 생산계획 등에 관한 노하우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 금액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구분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일체가 된 것으로 '사업운영 노하우'만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회계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을 뿐 이를 공제하기 위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로열티에 '사업운영 노하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대상으로 판단했고, 쟁점로열티를 전체 설비별 영업기여도에 따라 쟁점물품에 안분해 과세했다.

3) 쟁점로열티 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수입한 자본재(쟁점설비)는 약 ○○○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금액 이내이므로 해당 물품에 가산될 요소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 내에서 자본재가 도입돼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수입 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자본재 감면을 신청했다. 처분청은 자본재 감면을 받지 않은 수입물품은 투자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즉, 쟁점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전부에 대해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또한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자본재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게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도입하는 자본재 중에서 감면 여부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에 대해 자본재 감면을 적용받고자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관세감면 신청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자본재로서 감면받고자 했다면,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 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을 명시한 '면제신청서'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4)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사후에 가산할 로열티가 자본재로서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 역시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본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로열티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투자금액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다.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원론적으로 자본재 감면을 받은 제조설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권리사용료 역시 자본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 의견과 상이하지 않다.

Ⅳ. 쟁점 사항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2)]

② 자본재 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Ⅴ.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A사의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에 해당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돼 있는 점,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고, 그러한 용역이 제공되는지의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A사의 '사업운영노하우' 예시는 일반적인 경영자문 내용으로 보이고, 그 제공 방식도 출장·전화·회의 참석 등으로 청구법인조차도 이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노하우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오로지 관계사에게만 판매하므로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고도의 '사업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A사가 설비제작업체에 제공한 기본사양서 등에 따라 제조됐고, 쟁점물품 수입은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도입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됐다는 점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에 안분·가산해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쟁점로열티가 권리사용료로서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쟁점로열티가 과세된다는 전제하에 로열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에서 “관세 등 면제신청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자본재 도입명세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 1. 9. 기획재정부로부터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2012. 4. 23. 최종 자본재 감면 대상 쟁점설비 수입 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상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은 약 ○○○으로 나타나고, 해당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에 쟁점로열티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과처분일(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했다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2017. 9. 4.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로서 관세 등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한 제조설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 역시 관세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시 자본재 감면을 받았고,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련된 쟁점로열티를 가산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이내에 포함되므로 쟁점①물품과 관련된 쟁점로열티는 관세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관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 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자본재 도입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자본재 도입명세서에 쟁점로열티가 포함됐다거나, 쟁점로열티를 포함해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일부터 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했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2017. 9. 4.자 관세청장의 회신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자본재 감면받은 제조설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도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관세감면 신청이 없어도 관세감면을 허용한다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Ⅵ. 검토 의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 시작됐다. 그 후 1966년 「외자도입법」으로 변경돼 외국인의 투자 인가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는 198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적용대상기업의 범위에 따라 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변경돼 왔는데 그 당시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100%를 감면했다. 1987년 감면율을 70%로 축소했고 1991년에는 다시 감면율을 50%로 축소했다. 1995년에는 대상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했고 1998년에는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는 대신 감면대상을 축소했다. 2003년 이후에는 대상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에 차등을 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100% 감면되는 업종과 관세만 100% 감면되는 업종으로 구분했다. 2009년에는 기본제도를 유지하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조정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관세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기계류(HS 제84류), 광학기기류(HS 제90류)로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3)]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출자목적물'에는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9호에서 "자본재는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물,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2021.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에 대해서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로 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대외무역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를「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정리해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가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실체적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며, 절차적 요건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실체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자본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물,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② 자본재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③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이다. ①은 유형재(tangible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②는 용역(service)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① + ② + ③의 금액을 합한 가격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자본재의 유형만 규정할 뿐 자본재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조세특례제한법」역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관세감면이 된다고 규정할 뿐 자본재의 가격평가방법에 대해서 언급은 없다. 두 법에서 자본재의 가격평가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제2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 익금, 손금 등에 대한

평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내국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할 때 그 면제되는 관세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산출된 관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내국세법에 의해 평가·산출돼야 하고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 평가·산출돼야 한다.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해 산출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포장 및 용기비용, 생산지원되는 물품이나 용역,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국제운임과 보험료 등 총 6가지가 있으며, 공제요소는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운송에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인 경우 연불이자 등 총 4가지가 있다. 6가지 가산요소 중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가산요소들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에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가격조건을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한 경우 우리나라는 운임·보험료 포함(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지급한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돼야 한다. 그런데 수입자는 운임 일부를 누락해 수입신고했고 통관 후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운임을 추징했을 때 그 운임이 여전히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을 통해 지급된다면 추징한 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감면이 돼야 한다. 설사 우리나라가 FOB 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운임과 보험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자본재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운임과 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권리사용료 역시 운임과 보험료의 지급방식과 같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할 수도 있고 실제지급가격과 분리할 수도 있다.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돼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유체물(有體物)에 한정되므로[4] 원칙적으로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에 대한 사용대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권리사용료의 대상인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 또는 체화되고 권리사용료가

4) 예외적으로 HS Code 제2716호에 해당되는 전기에너지가 있다.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권리사용료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춰 결정하고 그 대신 차액을 권리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조세심판원의 대상사건의 경우 자본재와 관련된 특허 및 기술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가격과 분리해 지급한 사례다. 쟁점로열티가 자본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됐다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그 거래가격에는 권리사용료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관세감면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감면이 이뤄져야 한다. 즉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했든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했든 관계없이 거래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장은 2017. 9. 4.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로서 관세 등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한 제조설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가산 대상의 권리사용료 역시 관세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술노하우 및 엔지니어링비가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기술노하우 및 엔지니어링비가 권리사용료로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본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을 충족해 자본재의 거래가격을 구성해야 하며, 둘째 로열티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재 감면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요건으로 신성장동력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내국세감면기업 등에 해당돼야 함이 전제돼야 한다.

다음으로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거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3가지 유형의 자본재의 가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세법」간의 법리관계를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은 그 성격이나 실질에 따라 「관세법」의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로 분류될 수도 있고 공제요소인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관세법」의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법적인 권리를 포함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5)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 2015. 1. 9. 선고

의 정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6]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재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므로 해당 사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이 「관세법」상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돼 자본재의 거래가격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전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관세법」상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에 해당되면 비록 해당 비용이 「관세법」상 공제요소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자본재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세가격에 포함돼야만 비로소 관세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7]"이 「관세법」상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돼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산식에서 산출된 관세액을 대상으로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세심판원 대상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거나 거래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수입 후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인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애당초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아 관세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감면을 해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은 특정 비용에 대해 관세감면을 하기 위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감면하는 것은 관세평가 법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관세감면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 범위를 깎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이 「관세법」상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권리사용료 등 6가지의 가산요소에 해당돼야만 비로소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이 「관세법」상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

6)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7) 참고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은 자본재와 관련된 시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자본재에 관련 없는 기업운영상 기술이나 용역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 자본재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만 관세감면 대상이고 예컨대 사무용품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는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다.

해당돼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백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별도로 지급한 로열티가 자본재 가격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로열티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감면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자본재 도입명세서에 쟁점로열티가 포함됐다거나, 쟁점로열티를 포함해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일부터 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로열티가 자본재 누적금액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쟁점로열티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본재 구입 대금은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그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반드시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 심사청구 사례(심사-2008-18호)를 보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총금액은 330억 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중 약 243억 원은 공장 설립 및 각종 운영자금 등으로 이미 사용했고 추후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금액은 출자금 잔액과 국외 관계사로부터 외화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그 당시 쟁점은 차입한 외화를 가지고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세관은 쟁점물품이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당초 자본금으로 도입한 자본재가 아니므로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08. 12. 26. 기획재정부는 "우리 부의 2008. 10. 13.자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247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장·사업장 설립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경우에,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라면 출자받은 자본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별도의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는 취지로서, 쟁점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이므로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외국인투자상담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태를 조회한 결과, 공장 설립을 위한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의 경우 '공장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등이 먼저 이뤄지고 다음으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 진행 순서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자부담이 없는 자본금을 공장운영자금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차입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용도제한으로 자금운용상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KOTRA의 의견을 토대로 해,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과 외화 차입금으로 공장 건설 및 기계설비 구입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에 따른 투자촉진"이라는 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했으며 더욱이 외국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방경제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경정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는 수입 신고 당시 자본재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으므로 별도의 관세감면 신청 없이 관세 등이 감면돼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8)]

이에 따라 관세감면이 해당되는지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실체적 요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관세법」상 관세감면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세감면 신청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9)]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감면 신청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물품기준설과 ② 가격기준설 등 두 가지 설이 있다. 물품기준설은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을 신청한 경우라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의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설이다. 반면 가격기준설은 수입신고 감면신청을 했다고 해도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의 증액이 발생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이다.

---

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다수

9)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23 판결 등 다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취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요지 및 감면실무 등을 고려할 때 가격기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로열티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비록 쟁점로열티가 자본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충족되고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본다.

Ⅶ. 맺는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지급수단을 통해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관세감면이라는 조세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사건 역시 감면요건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해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 자본재의 가격은 「관세법」에 따른 거래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므로 권리사용료는 거래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그 권리사용료가 자본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관세감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관세법」상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권리사용료 등 6가지의 가산요소에 해당돼야만 비로소 관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쟁점이 되는 권리사용료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본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쟁점로열티가 세관장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경정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로열티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투자금액 내에 있음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자본재도입확인서를 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로열티에 대한 관세감면 주장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식초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Ⅰ. 개요

우리는 레몬, 식초, 애플사이다비니거(애사비) 등과 같은 강한 신맛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강한 산미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신맛은 입안의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을 살린다. 특히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신맛을 접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신맛 '식초'를 만드는 과정과 종류 등을 통해 식초의 품목분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식초

1. 식초의 정의

식초는 액체 조미료의 하나다. 약간의 아세트산이 들어 있어 신맛이 난다. 샐러드드레싱이나 소스를 만들 때 또는 채소와 고기 맛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다. 과일·곡식·꿀·당밀과 같은 당분이 들어 있는 농산물에 박테리아나 효모를 넣어서 만들며, 재료에 따라 포도식초·사과식초·감식초·맥아식초 등이 있다.

■ 식초

1. 정의 :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희석초산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발효식초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하여 제조한 것을 감식초라 한다.

(2) 희석초산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 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규격

(1) 총산[초산으로서, w/v%(단, 고체식품은 w/w%)]: 4.0 ~ 20.0(다만, 감식초는 2.6 이상)

(2)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 (g/kg):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출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식초의 제조 과정

식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곡물 식초는 곡물을 원료로 해 누룩을 넣고 당화 과정, 알코올발효 과정 및 초산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다. 과일식초는 과일이나 발효액 등을 원료로 하는데 당화 과정 없이 효모를 사용해 알코올발효 과정과 초산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다. 흔히 대기업에서 만드는 식초는 주정을 원료로 과일즙과 첨가물을 넣고 물을 다량 추가해 속성으로 만들며 일부 화학적으로 만든 빙초산을 원료로 첨가물과 물을 넣기도 한다.

1) 당화 과정

당화 과정은 전분과 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곡물에 들어있는 전분을 발효가 잘 일어나도록 갈아서 만든 후 누룩과 물을 첨가하는 과정이다. 전통주를 만들 때 발효가 잘 되도록 쌀을 불려 사용하고 뜨거운 물에 반죽을 오래 하는 것은 당화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C_6H_{10}O_5)n(\text{전분}) + H_2O(\text{물}) \rightarrow C_6H_{12}O_6(\text{포도당})$$

2) 알코올발효 과정

곡물에서 당화된 당분이나 과일 자체에 있는 당분은 알코올발효 과정을 통해 술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에틸알코올을 만들면서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C_6H_{12}O_6(\text{포도당}) \rightarrow 2CH_3CH_2OH(\text{에틸알코올}) + 2CO_2(\text{탄산가스})$$

3) 초산발효 과정

초산발효는 산화발효의 한 종류로 아세트산균(Acetobacter)의 작용으로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 알코올을 산화시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 아세트산을 만든다. 다음 그림 '초산발효 과정'

에서 보듯 알코올탈수소효소와 알데하이드탈수소효소가 관여한다. 이는 식초를 만들 때 응용하며, 알코올발효, 젖산발효와 함께 옛날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다. 맥주와 같은 알코올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주류에 물을 타서 컵에 넣어 따뜻한 공기 속에 방치하면 표면에 흰 피막이 생기며 신맛이 난다. 이 피막은 아세트산균의 집합체다. 아세트산균은 호기성 세균이며, 공기가 풍부한 액면에서 잘 번식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신맛이 나게 된다. 아세트산균의 생육 최적온도는 20 ~ 30℃이며, 10℃ 이하 또는 45℃ 이상에서는 번식력이 매우 약해진다. 또한 알코올 농도가 5 ~ 10%의 범위가 아니면 균이 발육하지 않고 생성된 아세트산 농도가 10% 이상이 되면 균은 없어진다.

● 초산발효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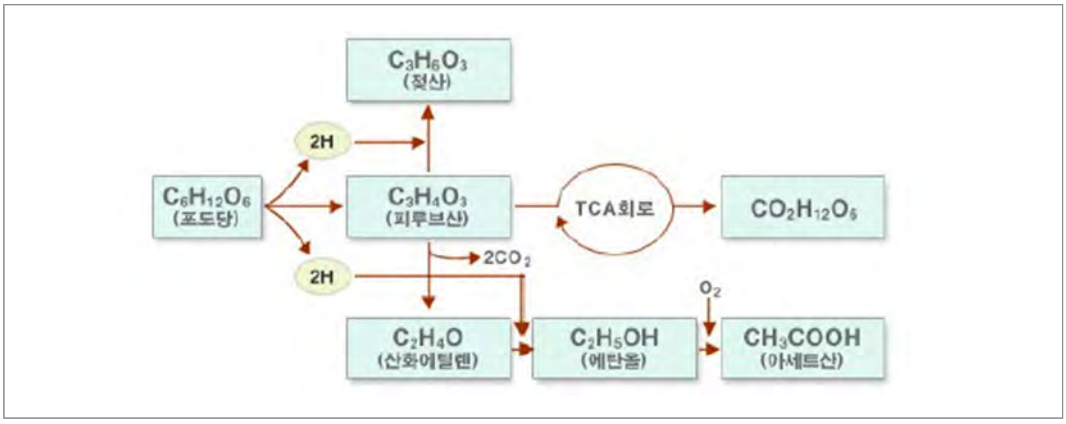

3. 식초의 종류

식초는 만드는 방법 및 사용하는 원재료, 발효과정, 만들고 숙성하는 기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만드는 방법에 따른 분류

발효식초 또는 양조식초와 합성식초로 나눌 수 있다. 발효식초는 초산균이 관여하는 발효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식초로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보는 양조식초, 사과식초, 발사믹, 흑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빙초산을 물에 희석하고 맛이 나도록 아미노산이나 당류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 합성식초도 식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단무지, 쌈무, 케첩, 마요네즈 등 소스류에 사용된다.

● 자연발효 식초와 주정발효 식초의 차이 ●

구분	자연발효 식초	주정발효 식초
원재료	과일, 곡물	알코올
발효 과정	과일, 곡물 → 알코올발효 → 2차 초산발효	알코올 → 초산발효
발효 시간	최소 6개월 ~ 1년	짧으면 3일

2) 원료에 따른 분류

발효식초는 식초를 만드는 원료에 따라 곡물식초와 과일식초로 나눌 수 있다. 곡물식초는 쌀, 보리 등에 있는 전분을 누룩 등 효모를 통해 분해해 당화 과정과 알코올발효 과정을 거친 후 술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초산균 스타터를 접종해 식초를 만든다.

과일은 그 자체가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효모를 넣어 와인, 과일주를 만들고 초산균 스타터를 넣어 식초를 만든다. 알코올발효 과정에서는 공기를 차단해야 하며, 공기가 들어가면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신맛이 난다. 식초는 만드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면 유용한 성분들이 잘 우러난다고 한다.

식초는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포도식초, 사과식초, 쌀식초, 현미식초, 흑미식초, 맥주식초, 사탕수수식초, 코코넛식초 및 이들 원료를 혼합한 원료로 만든 식초 등 많은 종류가 있다.

3) 원재료, 발효 과정, 시간에 따른 분류

식초를 원재료와 발효 과정 및 만드는 기간에 따라 천연발효식초(전통식초)와 속성식초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발효식초는 원재료부터 시작해 당화 과정, 알코올발효 과정, 초산발효 과정을 거쳐 몇 개월부터 오랫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므로 원재료 성분이 식초에 우러나와 다량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속성식초는 당화 과정, 알코올발효 과정 없이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 함량 95% 이상의 주정을 원료로 물을 많이 희석하고 과일 착즙액 및 첨가물 등을 첨가해 20시간에서 3일 정도 속성으로 만드는 식초로 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Ⅲ. 경합세번

식초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물에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식초, 분말 형태의 식초,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초의 기준인 총산함량이 4 미만인 식초에 대한 품목분류를 고민해 보겠다.

1. 마시는 식초

과일 발효식초 9%, 프락토올리고당 44%, 감귤 농축액 4.5%, 구연산 1.3%, 비타민C, 감귤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총산 2.22w/v%이며 물, 우유, 탄산수 등에 2 ~ 5배 희석해 음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2. 빙초산 분말

빙초산(15.8%)을 말토덱스트린(84.2%), 정제수와 혼합하고 살균해 분무 건조한 백색계 분말(초산 함량 약 7%)의 품목분류

3. 사과식초

발효 영양원, 포도당, 효모추출물, 주정을 혼합해 초산발효하고 고과당, 사과농축액, 사과향 등을 혼합해 숙성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900㎖, 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12%]

4. Brewery vinegar

사과식초에 농축사과주스를 혼합·숙성한 후 발사믹식초를 소량 넣어 만든 갈색계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 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3.21%]

품목번호		품명	세율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90		기타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1010	콜라 베이스	기본 8%
	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기본 8%
	1090	기타	기본 8%
	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 8%
	30	인삼제품류	
	90	기타	
	9099	기타	기본 8%

Ⅳ.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제2106호 해설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 <중략> …

(2)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감초 추출물(extract)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제조용의 향미용 가루('cocoa-powder'로 판매한다)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 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香味 : flavouring) 성분을 함유한다(전부나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물·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8)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태블릿(tablet)

(9) 단과자·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10) 사카린(saccharin)과 어떤 식품[예 : 유당(lactose)]으로 구성된 감미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예 : 태블릿(tablet)]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ant)·레몬(lemon)·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이 호의 합성조제품[위의 (7)을 참조]이 첨가된 향미(香味)있는 시럽으로서 특히 콜라에센스(cola essence)와 구연산을 함유하며 캐러멜화 당(caramelised sugar)으로 착색한 것이나 구연산과 과실[예 : 레몬이나 오렌지]의 정유(essential oil)를 함유한 것 ;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 완하(緩下 : laxative)·하제(下劑 : purgative)·이뇨(利尿 : diuretic)·구풍(驅風 :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15) 서로 다른 류(예 :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 <중략> …

(17) 설탕·향미제나 착색제[예 : 식물 추출물이나 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 같은 특정 과일이나 식물]·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나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둘 다]·보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그러나,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 관세율표 제2209호의 용어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제2209호 해설서

(I) 식초(vinegar)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 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 ~ 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酸)용액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식초를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의 원료에 따라 구별한다.

(1) 포도주 식초(wine vinegar) : 원료인 포도주(wine)의 종류에 따라 담황색이나 적색이 있으며 ; 예를 들면, 포도주 에스테르(wine ester)의 존재 때문에 특별한 향(香 : bouquet)을 갖는다.

(2) 맥주나 맥아에서 얻은 식초 ; 사과술·배술이나 그 밖의 발효한 과실 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

(3) 주정 식초(spirit vinegar) : 이는 자연 상태에서 무색이다.

(4) 곡물·당밀(糖蜜 : molasses)·가수분해 감자·락토세룸(lactoserum) 등에서 얻은 식초

(II) 식초 대용물

식초 대용물은 초산(acetic acid)을 물로 희석하여 얻으며, 이 같은 물품은 때로는 캐러멜(caramel)이나 그 밖의 유기착색제로 착색한다[아래의 제외규정(a)도 참조].

식초와 식초 대용물[음식의 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香味 : flavour)를 나게 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초산을 전 중량의 10% 초과 함유하는 수용액(제2915호). 그러나 식초 대용물로서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향(香)을 첨가하거나 착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산이 전 중량의 10%에서 15%를 함유한 그러한 용액은 제22류의 주 제1호 라목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이 호에는 분류한다.

(b)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c) 토일렛 비니거(toilet vinegar)(제3304호)

V. 품목분류

□ 식초와 음료베이스 품목분류 간단 정리

① 총산기준으로 식품공전상의 식초 정의(4 ~ 20%)와 관계없이 음료베이스로 전용해 사용하면 제2106.90-1020호에 분류

② 총산기준으로 식품공전상의 식초 정의(4 ~ 20%)와 관계없이 식초로 사용되는 경우 제2209호에 분류

1. 총산기준으로 4% 이상에 식초로 전용 사용 : 제2209호
2. 총산기준으로 4% 이상에 음료베이스로 전용 사용 : 제2106.90-1020호
3. 총산기준으로서 4% 이하에 식초로 전용 사용 : 제2209호
4. 총산기준으로 4% 이하에 음료베이스로 전용 사용 : 제2106.90-1020호

1. 마시는 식초

결정 세번	제2106.90-102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과일(사과·청포도 농축액) 발효식초 9%, 프락토올리고당 44%, 감귤 농축액 4.5%, 구연산 1.3%, 비타민C 0.5%, 강황 추출물, 스테비올배당체, 감귤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ml)[총산 2.22 w/v%] ㅇ 용도 - 식용(물, 우유, 탄산수 등에 2 ~ 5배 희석해 음용)
결정 사유	**(갑론)**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가 세분류하고 있음. 본 품이 제2209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제2209호 해설서에서 식초와 식초 대용물에 대해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나게 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식초에 당, 과실농축액, 향 등을 첨가해 변성한 식초도 제2209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품은 총산에 관계없이 식초의 특성을 유지하고 그 특성을 이용해 음료로 사용하는 제품임. **(을론)**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HSK 제2106.90-102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중 '과일향의 음료베이스'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ant)·레몬(lemon)·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으로 이루어진 것 등으로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론)** 본 건 물품은 총산 함량이 약 2% 정도로 국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식초류의 총산 규격(초산 4 ~ 20%)에 부합하지 않고 물이나 우유, 탄산수 등에 희석하여 음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106호의 음료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중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2. 빙초산 분말

결정 세번	제2106.90-909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빙초산(15.8%)을 말토덱스트린(84.2%), 정제수와 혼합하고 살균해 분무 건조한 백색계 분말(초산 함량 약 7%) ㅇ 용도 - 식품(수프, 스낵, 어묵 등)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제제
결정 사유	**(갑론)**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뤄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209호의 식초 대용물은 액체상태의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액체가 아닌 분말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을론)**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2209호에 분말상의 식초가 분류 가능한지 살펴보면 액체식초를 분말상으로 변환시켰다 하더라도 사용 편의성이 증대됐을 뿐 식초의 본질적인 특징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본 품의 초산함량은 국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초류의 총산규격(초산으로서 4 ~ 20%)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함. **(결론)** 본 건 물품은 빙초산을 말토덱스트린 등과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 식료품으로 수프, 어묵 등 식품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분말상의 혼합제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3. 2배 사과식초

결정 세번	제2209.00-100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발효 영양원, 포도당, 효모추출물, 주정을 혼합해 초산 발효하고 고과당, 사과농축액, 사과향 등을 혼합해 숙성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900㎖, 초산 함량 : 약 12%) ㅇ 용도 - 식초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 해설서 '(I) 식초(vinegar)'에서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

	(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 ~ 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제2209호 제외규정에 "(a) 초산을 전 중량의 10% 초과 함유하는 수용액(제2915호). 그러나 식초 대용물로서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향(香)을 첨가하거나 착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산이 전 중량의 10%에서 15%를 함유한 그러한 용액은 제22류의 주 제1호 라목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이 호에는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의 초산함량은 약 12%이나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과향, 사과농축액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양조식초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4. Brewery vinegar

결정 세번	**제2209.00-1000호**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사과식초에 농축사과주스를 혼합·숙성한 후 발사믹식초를 소량 넣어 만든 갈색계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 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3.21%] ㅇ 용도 - 식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I) 식초(vinegar) :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 ~ 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이다."라고 설명하면서 "(2)맥주나 맥아에서 얻은 식초 ; 사과술·배술이나 그 밖의 발효한 과실 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양조식초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땅콩 조제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땅콩버터(peanut butter)는 볶은 땅콩을 주재료로 잘게 빻아 반죽 형태로 만든 스프레드의 일종이다. 북아메리카, 네덜란드, 영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일부에서 인기가 높다. 주로 식빵에 발라먹고 젤리·잼 등을 함께 넣은 '땅콩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땅콩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수백 년 전부터 토착민인 아스테카인들이 땅콩을 으깨어 반죽 형태로 사용했다. 아스테카인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초기 땅콩버터는 볶은 땅콩으로만 만들어졌다. 이런 초기의 땅콩버터는 얇게 펴바르기 힘들고, 덜 부드러웠으며 당도가 덜했다. 이후 식물성 기름이 땅콩 반죽에 같이 포함되면서 바르기 쉬워졌고, 현대식 분쇄기가 개발되면서 매우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오늘날 땅콩버터에 대한 최초 기록은 1884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마셀러드 에드슨에게 미국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에 남아있다. 에드슨은 뜨거운 표면에서 유체 상태가 될 때까지 볶은 땅콩을 분쇄하는 공정을 개발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가공 후 식힌 땅콩버터는 고형의 버터나 라드와 같은 질감을 갖는다. 흑인 발명가 조지 워싱턴 카버는 에드슨의 가공법을 생산 과정에 응용해 오늘날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땅콩버터를 개발했고 이 덕분에 미국에서 땅콩버터의 개발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땅콩 조제품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땅콩페이스트, 땅콩, 팜올레인유, 설탕, 식물성 경화유지, 옥수수전분, 정제소금, 레시틴, 합성땅콩향, 전지분유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으로 '땅콩버터'에 해당하는 제2008.11-1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관세율표를 보면,

HSK			
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1		땅콩
	11	1000	**피넛버터**
	11	9000	**기타**

제2008호에 피넛버터와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다.

제2008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허나, HS 해설서에 땅콩의 함량기준이 없어 어디까지 피넛버터로 볼 것인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전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품목분류2과-9723(공개, 2017-09-12) 사례가 있다.

물품 설명	볶은 땅콩(70%)을 분쇄해 설탕(29%), 면실유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이 HSK 제2008.11-1000호의 ‘피넛 버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그간 관세청은 땅콩버터에 대한 HS 해설서상 땅콩의 함량기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외국 분류사례 등을 참고해 **땅콩 함량이 80% 이상인 페이스트상을 HSK 제2008.11-1000호 피넛버터로 품목분류**했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업체는 땅콩 함량 80% 이상인 페이스트상을 피넛버터로 인지해 수입신고하고 있어 비록 관련 고시가 변경*됐다 할지라도 시장의 안정성, 품목분류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변경사유〕 품질기준에서 안건기준 강화 목적으로 변경 볶은 땅콩 80% 미만을 분쇄해 설탕, 면실유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인 본건 물품은 땅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따라서, 위의 사전심사 결과를 참조해 피넛버터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땅콩 함량이 80% 이상인 기준을 충족해야 제2008.11-1000호에 분류할 수 있다.

본 물품은 땅콩페이스트, 땅콩의 함량이 80%를 넘지 않는 제품으로 피넛버터에 해당하지 않아 제2008.11-9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EANUT BUTTER (CRUNCHY)	2008.11-1000 (FAS1 0%)	Peanut Preparation	2008.11-9000 (FAS1 51.1%)

제주 해수욕장 뒤덮은 미역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제주시 유명 해수욕장인 이호해수욕장에 미역 쓰나미가 덮쳤다.

지난 4월 16일 이호해수욕장으로 엄청난 양의 미역 더미가 떠밀려 오면서 제주시는 수일간 수거 작업에 고역을 겪었다. 제주시 소속 바다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자가 쓰레기 포대로 미역을 일일이 수거했지만, 17일 단 하루 동안 수거한 해조류 양이 20톤에 달할 정도로 역부족이었다. 트랙터를 동원해 해변의 미역 더미를 치우려고 시도했지만, 트랙터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사람 손으로 일일이 수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십 톤에 달하는 미역이 백사장으로 떠밀려 온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도 조사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번 이어진 거센 풍랑으로 바위에 붙어있던 미역이 떨어진 것으로 봤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역의 밑동을 포함한 전체적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볼 때 최근 강한 파도가 수일간 몰아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에 영향을 받아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역(학명 : *Undaria pinnatifida*)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미역과의 갈조류이다. 식물과 유사하지만, 분류상으로는 식물이 아니라 원생생물에 속한다. 무기질, 비타민 및 섬유질 성분, 점질성 다당류, 아이오딘을 함유하고 있어 식용된다"라고 사전에 정의돼 있다.

관세율표에서 미역은 가공 조제하지 않은 것이나 건조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은 제1212호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분류되고 있다.

해초(海草 : seaweeds)류와 해조(海藻 : algae)류는 구분되고 관세율표에서 각기 따로 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30호_2025.5.19.

최신개정법령

부령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고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령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 5. 16.)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 9. 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 본문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및 N08367에 해당하는 강종(鋼種)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이 함유된 것을 말하며, 니켈과 다른 원소가 함께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이고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상 316 또는 316L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524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GuoBiao)상 2Cr13, 3Cr13, 4Cr13, 6Cr13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경도가 250HV 이상 350HV 이하인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나.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다.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라.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사.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아.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차.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 이상 0.36밀리미터 이하일 것

7. 0.05밀리미터 두께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양면에 코팅된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이상 8% 이하일 것

나.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 이상 18% 이하일 것

다.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5% 이하일 것

마.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 이하일 것- 2

바.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5% 이하일 것

사.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 이하일 것

아.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 이하일 것

자. 두께(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가 0.2밀리미터일 것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LTD.]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인도네시아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대만	4. 유스코(Yieh UnitedS 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목의 관계사 가.이예마우(Yieh Mau Corp.) 나.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와이씨엘(YiehCorporation Limited)
	5.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별표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82
	3.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네시아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5. 그 밖의 공급자	25.82
대만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7
	8. 그 밖의 공급자	9.07

비고 :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공급자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27호, 2025. 5. 1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 이유 ◇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

가.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ㅇ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제13조, 제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ㅇ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13조)
- ㅇ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타 개선사항
- ㅇ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16조)
- ㅇ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5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26호, 2025. 5. 1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 이유 ◇

□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개업신고 절차 신설 및 제품출납상황표 간소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신설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산업 유치 지원 등

◇ 주요 내용 ◇

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신설
- ㅇ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⑤)
- ㅇ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하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⑥)

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
- ㅇ 전자상거래 ① GDC 운영인의 자격, ②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 ③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물의 반입 절차 등 규정(§32~§32조의3)
  -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 ②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보고 등
  - ③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하여 반입

다. B/L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 생략 기준 신설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 ㅇ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37①)
- ㅇ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허용(§37③)

라. 용어 및 조문 정비
- ㅇ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반영
  - 자력 → 자금능력,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입회자 → 참관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지침」(수출입물류과-1784, ‘20.6.19) 폐지한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9호, 2025. 5. 16.)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따라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도축하여”를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로, “동물검역”을 “검사·검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글과”를 “한글 또는 영어와”로,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을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각 호”를 “제1항 각 호 각 목”으로 한다.

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3.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제8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